

본 내용은 2025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상품마다 관련된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 지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세금은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깊지는 않더라도 넓은 시각을 갖고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관련 이슈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 보다는 넓은 시각으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에 대해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 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가입조건	단계별 세금사항			비고
		가입 단계	유지 단계	수령 단계	
연금 관련	국민연금 (공적연금)	만 18세 이상 전국민	납입금액 100% 소득공제	연금소득이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상품이 아닌 국가제도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금액 100% 소득공제	연금소득이며, 연간 1,50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매년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중도해지시 분리과세(16.5%)	세제적격 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세액공제(한도 : 900만원)	중도해지시 분리과세(16.5%)	
	생명보험 연금	만 15세 이상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소득세법 조건 충족시 비과세, 조건 미충족시 이자소득세 과세	세제비적격 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만 19세 이상 (농어민은 15세 이상)	납입한도(1년2천만 5년1억) 있고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최소 3년 유지를 못하면 일반과세(15.4%)	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도 있음), 한도를 넘는 경우 9.9% 분리과세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소기업 법인대표	매년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 200~600만원)	중도해지시 분리과세(16.5%)	공제금에 퇴직소득세 과세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가입금액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보장성보험	만 15세 이상 근로자	매년 납입금액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과세대상 아님	
저축성보험	만 15세 이상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소득세법 조건 충족시 비과세, 조건 미충족시 이자소득세 과세	
국내주식	전국민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배당소득세 과세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주식	전국민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배당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채권	전국민	별도의 세제혜택 없음	이자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 상기 내용은 개인의 소득세법 기준이며, 법인의 경우 수령단계에서 대부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상기 금융상품은 서로 목적이 다른 금융상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재무설계를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자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금융상품의 실질수익은 세후 수익을 봄아 하기 때문에 세금부분을 미리 확인해 본다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은 필연입니다. 탈세는 불가능이며, 절세는 가능입니다. 본인에 맞는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이 세금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